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(최연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56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2. 10.

발의자 : 최연혜 · 곽대훈 · 김정재
정운천 · 경대수 · 김현아
김도읍 · 조훈현 · 강효상
이우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,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, 과태료 부과 · 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일반법인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이 제정되었음. 이에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 · 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하여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 · 징수 절차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(안 제1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).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1조(과태료) ① ~ ③ (생략)</p> <p><u>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「비송사건절차법」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.</u></p> <p><u>⑥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한다.</u></p>	<p>제141조(과태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